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2019년)



소방재난본부
(대응구조구급과)

업무담당자(문의) : 본부 구급대책팀 박지훈(☎ 230-4562)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지침의 적용조건	1
제2장 운영 방법	1
제4조 운영 책임	1
제6조 보관 기간	2
제7조 증거자료 등의 보존기간	2
제8조 저장 장치	2
제9조 저장 및 관리	3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3
제10조 정보수집 범위	4
제11조 녹음기능의 사용제한	4
제12조 정보열람 및 제공 요건	4
제13조 언론기관 등 정보제공 절차	4
제14조 열람 및 재생	5
제15조 열람자 제한	5
제16조 저장정보 관리	5
제17조 유출 및 훼손방지 조치	5
제18조 보안관련 교육의 우선 시행	5
제4장 안내표지 부착 및 점검	5
제19조 안내표지 부착	5
제20조 일상 점검	6
제21조 관리 감독	6
별지 제1호서식 : 화상정보 보존 등 관리 대장	7
별지 제2호서식 : 화상정보 이용·제공 대장	8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구급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구급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조건) 본 지침의 적용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과 “개인정보 보호법”,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가 우선하고 동 법규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2장 운영 방법

제4조(운영 책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부서는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서의 과(부서)로 하고 총괄책임자는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1. 구급차 영상정보기기 처리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2. 민원의 접수·처리 및 화상정보의 수집·관리
3. 영상정보 이용제공 및 안정성 확보
4. 119구급차량 영상녹화장치 설치현황 관리

②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구급차별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되, 운영책임자는 119구급대장(이하“구급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감독
2. 영상정보 안정성확보 및 정보삭제 감독

③ 운영책임자는 구급차별로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구급대원으로 하고 교대근무인 경우 근무 조별 각 1인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2.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3. 화상정보 입출력 관리대장 작성

제5조(녹화 범위) ① 영상정보의 녹화는 구급출동을 포함하여 구급차가 도로를 운행하는 시점부터 제반 임무를 완료하고 귀소까지로 하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녹화를 정지할 수 있다

1. 대민지원 등 특정현장에 도착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2. 교육·훈련, 축제성 행사장 배치 등 구급차가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

제6조(보관 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¹⁾은 정보 수집일로부터 1개월로 하며,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증거자료 등의 보존기간) ① 제6조 규정에 불구하고 폭행·안전사고·민원에 관련된 영상정보 등 목적상 1개월 이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컴퓨터 등을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유목적 달성 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저장 장치) ① 영상정보의 저장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서 : 총괄책임자가 지정하는 컴퓨터의 저장장치 및 외장형 저장장치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6의2(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2)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구급대 : 운영책임자가 지정하는 컴퓨터의 저장장치 및 외장형 저장장치
- ② 컴퓨터에 부착된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영상정보는 다수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구획된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 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의 경우 청사 여건상 구획된 별도의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구급대장의 컴퓨터를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자 및 담당자 이외의 자가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외장형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보조 기억매체 등록을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장이 완료된 외장형 저장장치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저장 장치의 지정 및 해제는 총괄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문서로 한다

제9조(저장 및 관리) ① 영상정보의 저장·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시스템 본체의 저장용량이 90%에 도달한 경우에는 지정한 저장매체에 저장·보관 하여야 한다
 2. 폭행·안전사고·민원 관련 영상정보는 즉시 지정한 저장매체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CCTV 본체의 저장장치에서 최근 1개월간의 파일이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저장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구급대의 컴퓨터 및 외장형 저장장치에 보관된 영상정보 중 1개월이 경과된 것은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는 제외한다
- ③ 운영담당자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이 사건 등에 관련된 영상정보는 즉시 저장 및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제10조(정보수집 범위)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녹음기능의 사용제한)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은 제외한다

제12조(정보열람 및 제공 요건) ①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자)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책임자 및 담당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에 의하여 요청하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서면 요청의 방법에 의한다
- ③ 영상정보를 열람·이용·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언론기관 등 정보제공 절차) 제12조 제4호에 따라 언론기관 등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영상정보는 구급대원 폭행·안전사고·민원 발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정보에 한한다
2. 제1호 외의 제공시에는 책임관이 영상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

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 영상정보를 저장장치에 담아 휴대하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홍보팀장)에 공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뢰하여 처리를 한다

5.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된 제4호의 조치 완료된 영상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 및 재생)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은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와 컴퓨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자 제한) 영상정보의 취급과 열람은 책임자 및 담당자로 제한한다

제16조(저장정보 관리) 영상정보 중 1개월이 경과하여 보존하는 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총괄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한다

제17조(유출 및 훼손방지 조치) 총괄책임자 등은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관련 교육의 우선 시행) ① 총괄 책임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운영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정보처리·보안 및 작동방법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내표지 부착 및 점검

제19조(안내표지 부착) ① 구급차에는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되고 있는 사실을 구급차량의 이용자 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환자실 및 출입문에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안내판이 훼손 및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촬영시간 및 범위·운영 책임자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내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여 제작·부착한다

제20조(일상 점검) ① 운영담당자는 근무교대 마다 기기 등을 확인하여 녹화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기 고장 등 녹화가 불능한 경우에는 즉시 정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근무일지 등에 장애발생 등의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 감독) ①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구급대에서 관리되는 CCTV 및 영상정보의 저장·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당해 구급대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가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수리를 요청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부서는 다른 고장수리에 우선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영상녹화장치 설치 안내판(안)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본 구급차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중입니다.

○○소방서장

☎ 000) ○○○-○○○

- 크 기 : 가로 20cm 이상 × 세로 15cm 이상
- 재 질 : 아크릴
- 부착방법 :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 선정 부착(내부)

※ 안내판은 실정에 맞게 변경 하여 부착하되 필히 부착하여야 함.